

# 고 성 군 상 징 물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417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7. 3.

총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3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3. 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3. 12

상임위원회 상정 · 부결

### 2. 제정이유

- 세계화, 지방화시대를 맞아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군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가. 제정 목적 :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의 꽃, 군의 나무, 군의 새,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조)

나. 군의 상징물 설정 (안 제3조)

- 군의 꽃 : 국화
- 군의 나무 : 은행나무
- 군의 새 : 까치
- 군의 마스코트 : 고룡이

다. 상징물의 사용 : 군 또는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군을 대표하는 각종자료 등에 사용 (안 제4조)

### 4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군 상징물이 조례로 제정, 설정되면 고성군의 영원한 상징물이 될 것 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난해 제46회 임시회시 고성군상징물조례안과 함께 상정되었다가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부결됨으로서 이와 필연적 관련이 있는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충보처에 등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고룡이상표를 공공연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
- 답 : 고성군 규정으로 처리하였음.
- 문 :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어려우면 고성군 규정으로 고성군수가 입의 처리해도 무방한지
- 답 :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.  
이해바람.

## 6. 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7. 3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음.